

2종 금융투자업자의 최소영업자본액 산정기준

(제2-8조의2 관련)

1.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산정기준

(펀드)

가.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고객자산 유형별로 다음의 적립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고객자산 유형별 적립 비율

고객자산 유형		적립 비율
집합투자재산 ¹⁾	증권집합투자기구 ²⁾	0.02%
	그외의 집합투자기구	0.03%
투자일임재산 ³⁾		0.03%
총계		

* 1)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중인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총액의 합계액 기준

2) 법 제229조제1호의 집합투자기구

3)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중인 전체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증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투자일임계좌 잔액의 합계액 기준

2.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 산정기준

가.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고유자산 유형별 재무상태표상 금액에 다음의 적립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고유자산 소유형별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 소유형별 적립 비율을 2배로 가중한다.

고유자산 유형별 적립 비율

고유자산 유형			적립 비율	
대유형	중유형	소유형		
증권	지분증권 ¹⁾	해외현지법인 지분 ²⁾	-	
		관계회사투자지분 ³⁾	7.5%	
		기타 투자목적주식 등	7.5%	
	채무증권	거래상대방이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⁴⁾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AAA 또는 AA+인 경우 ⁵⁾	1%	
		그외의 경우	5%	
	집합투자증권	자기운용 집합투자증권	-	
		타사운용 집합투자증권	5%	
			기타 증권 ¹⁾	7.5%
			대출채권	7.5%
		파생상품 ⁶⁾	10%	
		총계		

- * 1) 집합투자증권 제외
 2) 금융투자업규정 제3-65조에 따른 해외점포에 출자한 금액
 3) 해외현지법인을 제외한 관계회사투자지분
 4) 한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이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
 5)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의 34호(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산정
 6)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회계처리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제외